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88

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 박상웅・안상훈・유용원

최보윤 • 유상범 • 강승규

김미애 • 박준태 • 박덕흠

이인선 • 조지연 • 진종오

김민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 · 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,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역량 활용이나 외국 현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기술이전 · 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 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 설).

법률 제 호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6조(국제 기술이전・사업화의	제16조(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		
촉진) ① (생 략)	촉진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	2		
기술이전・사업화에 관한 국제			
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			
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			
다. <u><후단 신설></u>	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		
	의 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		
	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협조		
	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		
	받은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		
	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	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		